

2016년도 제 4차

(2016. 11. 07.)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세 한 대 학 교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2016년도 제 4차

회의소집 통보일	2016. 11. 01
의원정수 11명	참석의원 6명

1. 일 시 : 2016. 11. 07. 11 : 00

2. 장 소 : 대학본부 3층 회의실

3. 참 석

구 분	직 명	성 명	비 고
참 석	의 장	안종기	
참 석	부 의장	류승희	
참 석	의 원	박희석	
불 참	의 원	이봉숙	
불 참	의 원	박상진	
참 석	의 원	전노선	
참 석	의 원	박장현	
참 석	의 원	강창규	
참 석	의 원	정상문	
불 참	의 원	김 옹	
불 참	의 원	오정욱	

4. 회의안건

가. 학칙 개정 건.

5. 회의내용

안종기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

서명	강창규	서명	류승희	서명	박희석
----	-----	----	-----	----	-----

씀을 전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 4차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학칙 개정 건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교학처 양시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경과장은 학칙 개정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시경과장이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가. 교육부의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에 따라 집단 활동시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과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

나.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만 가능하였던 것을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제71조의2 신설)

나.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시 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함(제47조제1항)

3. 개정학칙 변경안

○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제71조의2 신설)

○ 재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시 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 2학년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개정함(제47조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서명	강창국	서명	김현진	서명	박자현
----	-----	----	-----	----	-----

4. 학칙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 (전(부)과) ① 전(부)과는『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허용 할 수 있다. 단, 재학 연한과 상관없이 전(부)과를 희망하는 경우 재이수 신청에 의해 해당학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전(부)과의 시행 시기와 허용범위, 절차,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u>제71조의2 신설</u></p>	<p>제47조 (전(부)과) ① 전(부)과는『고등교육법』이 정한 해당학과 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제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단, 재학 연한과 상관없이 전(부)과를 희망하는 경우 재이수 신청에 의해 해당학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71조의2(집단활동)</u> 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 행사, 대학전체 행사 등의 집단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p> <p>②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담당교수와 학생대표는 연대 책임을 지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안종기 의장 : 양시경과장으로부터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

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류승희 부의장 : 학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안종기 의장 : 학칙개정(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의원 : 없습니다.

안종기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학칙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 결과 오늘 회의록에 간서명 하실 의원 세분을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정상문 의원 : 오늘 회의록에 간서명하실 분은 박장현의원, 강창규의원, 전노선의원

서명	강 창 규	서명	KJW	서명	박 장 현
----	-------	----	-----	----	-------

세 분을 추천합니다.

안종기 의장 : 의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의원 : 동의합니다.

안종기 의장 : 그럼 회의록 간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장현의원, 강창규의원, 전노선의원 세분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되면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의결사항

-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위 사실을 확인함.

2016. 11. 07.

서명	강창규	서명	박장현	서명	전노선
----	-----	----	-----	----	-----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안종기

안종기

부의장 류승희

류승희

의원 이봉숙

이봉숙

의원 박희석

박희석

의원 박상진

박상진

의원 전노선

전노선

의원 박장현

박장현

의원 강창규

강창규

의원 정상문

정상문

의원 김옹

김옹

의원 오정욱

오정욱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6. 11. 07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안종기

서명	강창규	서명	전노선	서명	박장현
----	-----	----	-----	----	-----